



환경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18년도 생태휴식공간 확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'18년도 생태휴식공간(자연마당, 생태놀이터) 조성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(대상)		예산액	기교부액	금회교부액	교부잔액	비고
합계		6,409	5,279	687	443	
자연마당 조성	7개시도	4,070	3,600	27	443	
생태놀이터 조성	14개시도	2,339	1,679	660	0	

* 국고보조율 : 30%

붙임 : 2018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각 1부. 끝.

환경부장관



수신자 서울특별시(자연생태과장), 인천광역시(환경정책과장), 대전광역시(환경정책과장), 전라북도지사(자연생태과장)

주무관 김미정 사무관 승진 예정대결 03/13 자 김응철 과장 전결 이재은

협조자

시행 자연공원과-528 (2018.03.13.) 접수 자연생태과-4794 (2018.3.14.)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(어진동) / http://me.go.kr
전화 044-201-7318 /전송 044-201-7310 / kim99@me.go.kr / 대시민공개

2018년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.

1. 국고보조 사업명 : 생태휴식공간 확대(생태놀이터) 조성사업
2. 국고보조액(금회 교부액) : 2,339백만원(660백만원), 국고보조율30%

(단위 : 백만원)

보조사업자		사업명	예산액	기 교부액	금회 신청액	금회 교부액	교부 잔액	비 고
시도	시군구							
계			2,339	1,679	660	660	-	
서울	은평구	생태 놀이터 조성	150	-	150	150	-	보조율 30%
부산	강서·사상		255	255	-	-	-	
대구	달서·동구		240	240	-	-	-	
인천	연수구		150	-	150	150	-	
울산	남구·북구		300	300	-	-	-	
대전	대덕구		150	-	150	150	-	
강원	원주		150	150	-	-	-	
경기	동두천		150	150	-	-	-	
충북	청주		150	150	-	-	-	
충남	태안		90	90	-	-	-	
전북	전주		120	-	120	120	-	
	익산		90	-	90	90	-	
전남	순천		150	150	-	-	-	
경북	안동		104	104	-	-	-	
경남	김해		90	90	-	-	-	

3. 예산과목 : 074-1800-1831-302-330-03(자연환경, 생물자원보전-생태계보전-생태휴식공간 확대-자치단체자본보조, 지역발전특별회계)

4. 교부조건

- 가.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내용 변경,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
- 나.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할 경우에는 사용 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

- 다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·계리하여야 함
- 라.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음
- 마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,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실적을 보고하여야 함
- (1) 회계연도 종료 시 : 종료 전 15일 이내
 - (2) 준공 시 : 준공 후 30일 이내
 - (3) 그 밖에 사업 추진 실적 파악을 위해 실적 제출을 요구받은 때
- 바. 보조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적 검토를 수행하고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관련 지침,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설계 및 시공자는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서 규정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를 통하여 이행하여야 함

환 경 부 장 관(직인생략)

<붙임>

2018년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1. 예산과목 : 2018년 생태휴식공간 확대

(지역발전특별회계 074-1800-1831-302-330-03)

2. 사업자 :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기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경상북도지사

3. 사업명 : 자연마당 조성(국고보조 30%)

4.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시·도	시·군·구	사업명	예산액	교부신청액	기교부액	금회교부액	교부잔액
합계			4,070	3,627	3,600	27	443
서울시	동작구	자연마당 조성	27	27	-	27	-
부산시	북구	자연마당 조성	360	-	-	-	360
	기장군	자연마당 조성	360	360	360	-	-
울산시	북구	자연마당 조성	360	360	360	-	-
경기도	-	자연마당 조성	28	-	-	-	28
충북도	청주시 충주시	자연마당 조성	1,260	1,260	1,260	-	-
전북도	부안군 고창군	자연마당 조성	1,260	1,260	1,260	-	-
경북도	포항시	자연마당 조성	360	360	360	-	-
미정			55				55

5. 교부조건

가.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내용 변경,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

- 나.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할 경우에는 사용 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
- 다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·계리하여야 함
- 라. 교부받은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이월이 허용되지 않으며, 불가피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할 수 있음
- 마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,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실적을 보고하여야 함
- (1) 회계연도 종료 시 : 종료 후 1개월 이내
 - (2) 준공 시 : 준공 후 30일 이내
 - (3) 그 밖에 사업 추진 실적 파악을 위해 실적 제출을 요구받은 때
- 바.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적 검토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(생태환경전문가 등),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,
-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등 관련 규정·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
환 경 부 장 관(직인생략)